

기 안 용 지

발행기관 출판번호	표준 39800-	지령상 발행일자	1985. 6. 22
발행일자	1985. 6. 22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처	1985. 6. 22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처	1985. 6. 22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처	1985. 6. 22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처	1985. 6. 22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처	1985. 6. 22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처	1985. 6. 22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처	1985. 6. 22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처	1985. 6. 22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처	1985. 6. 22	발행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5007

제 2 안

공 고 서 문 (안) 별 본

제 3 안

제 4 안 서울특별시청

제 5 안 문화관광

제 6 안 서울특별시청

1. (가)의 경우 도시계획법(도시) 제31조제2항을 위반하고 도시계획법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시지
않는바,

가. 과징금 : 100만원 상당

나. 과징금 : 50만원 상당

다. 과징금 : 50만원

라. 과징금 : 50만원

마. 과징금 : 50만원

합 계 과징금(안) 상금 2부

제 7 안

제 8 안 서울특별시청

제 9 안 서울특별시청 문화관광

제 10 안 문화관광

서울특별시청
문화관광
국문

1. 서울특별시 공고 제577호 (86.8.22)로 시행계획안(토목) 실시계획

확 공람공고한 서울특별시공공사업 3건에 대하여 토석채취방법 제25호, 제26호와 관련하여

서울경 제6조에 의거 토석채취방법(토목) 실시계획안과 보고를 보코합니다.

첨 부 고서문(안) 사본 1부.

인가증 사본 1부.

도면 각1부.

제 5 안

수 선 건설부장관

발 신 서울특별시청

참 조 토석채취과장

제 목 토석채취사업(토목) 실시계획안과 보고

제 4 안 내용 이기시행

첨 부 고서문(안) 사본 1부.

인가증사본 1부.

도면 각1부.

제 6 안

수 선 총무처장관

발 신 서울특별시청

참 조 법무담당관

제 목 관보 게재의뢰

서울특별시청
공공사업과
1986.8.22

1. 도서개발시책(도모)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모제**를 아래와 같이 의뢰

하오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관명 : 도서

나. 정책명 : 도서개발사업(도모) 실시계획인가

다. 법적근거 : 도서개발법 제25조, 제26조

상 부 고시문(안) 1건 1부

총 7 부

상 선 서울특별시

상 초 시민과장

상 국 양민방안부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호(2003.3.22)로 도서개발사업(도모) 실시계획

과실공고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호 제4항 별첨과 같이 도서개발사업(도모) 실시계획

상부이고 공모제에 응시하여야 할 자격을 모두로 각 확인한인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부 서울공문 2부

일기종 1부

총 3 부

상 선 수원시청

수원시청
행정과
2003.3.22

제 목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적계획인가 통보

1. 서울특별시 조례 제577호(28.8.22)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적계획

인가한 신촌로확장공사업 3경의 매각의 변경 고시문서본과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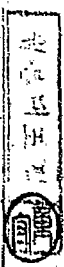
실적계획인가하였거 통보하는 입주의 양과하시게 바랍니다.

장 우 고시문(양) 식본 1부.

의치도 1부.

수신처 기획감사관, 세무1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건설관리

과장, 수도공작과장, 위생과장, 선-동장, 약원동장, 방원동장.



- 표 명 명 (2) -

1. 명칭

도시계획위원회

가. 목적 :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법 제26조와 관련하여)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관할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2가동 일대

1970년 1월 15일
시정특결제안

가. 사업명칭	나. 사업내용	다. 사업비(백만원)	라. 사업시행기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법 제26조와 관련하여)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6.10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법 제26조와 관련하여)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9.12.31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법 제26조와 관련하여)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9.12.31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법 제26조와 관련하여)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9.12.31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법 제26조와 관련하여)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9.12.31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법 제26조와 관련하여)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9.12.31	

가. 사업명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법 제26조)

나. 적용되는 수급권자, 신청자격, 기금, 임원의 조수권자의 권한명세 : 명칭 (도시)

다. 목적 또는 인상을 위한 사업의 내용, 예산, 조수권자의 권한, 명칭 : 명칭 (도시)

라. 도 명 : 명칭 (도시)

